

## 의무 신고자(Mandated Reporters) 가이드라인

### 의무 신고자란?

일반 시민도 아동 학대 및 방임 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특정 직업군의 경우 학대나 방임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신고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인: 의사, 정신과 의사, 외과의, 레지던트, 인턴, 치과의사, 치위생사, 의학 검사관(medical examiners), 병리학자, 접골사(osteopaths), 검사관,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사, 척추 지압사, 족부 전문의, 등록 및 면허 소지 실무 간호사, 응급 구조사, 약물 남용 치료사, 병원 관리자 및 환자의 검사, 처치 또는 치료를 담당하는 기타 직원.
- 학교 및 보육 시설 직원: 교사, 관리자, 인가 또는 비인가 학교 직원, 학교 이사회 위원, 학교 규정에 따라 아동에게 배정된 교육 옹호자, 무단 결석 지도원, 데이케어센터 및 보육원 책임자 및 보조원, 보육원 직원.
- 법 집행 기관: 무단 결석 지도원, 보호 감찰관, 법 집행관,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현장 직원
- 주 정부 기관: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DCFS), 공중보건국(DPH), 교정국, 인권국(DHS) 현장 직원 및 일리노이 공공지원법(Illinois Public Aid Code)에 의거한 일반 지원 감독관 및 관리자
- 기타: 사회 복지사, 상담사, 사회 서비스 관리자, 약물 남용 치료사, 가정 폭력 프로그램 담당자, 위기의 전화 또는 핫라인 담당자, 위탁 부모, 주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또는 시설 담당자, 등록 심리학자 및 심리학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보조원, 장례 시설 책임자 및 직원, 성직자

선의를 의무 신고자는 비의무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의무 신고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사례를 DCFS에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행위는 두 번째 적발 이후부터는 4급 중범죄(Class 4 felony)로 분류됩니다.

### 의심 사례를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교장 또는 행정관)에게 의심 사례를 알릴 수도 있지만 의무 신고자의 요건은 핫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현재 18세 이상의 성인이 어린시절에 학대를 당한 경우도 의무 신고 사례에 해당하나요?

과거에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학대할 의심 가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접근했거나 현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핫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 신고자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으로 연락하고 48 시간 이내에 DCFS 담당 부서로 서면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DCFS에서 제공합니다. 아동의 사망 원인이 학대나 방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카운티 소속 검사관이나 법의관에게도 연락하셔야 합니다.

### 주의

DCFS에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2012년 제정 형법 26-1조 (a)(7)항에 명시된 무질서한 행위(disorderly conduct)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위반은 4급 중범죄로 분류됩니다.(출처: P.A. 97-189, eff. 7-22-11; 97-1150, eff. 1-25-13.)

### 의무 신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어떻게 알아보면 되나요?

DCFS는 의무 신고자가 아동의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내하는 '아동 학대 확인과 신고: 의무 신고자 교육(Recognizing and Reporting Child Abuse: Training for Mandated Reporters)'이라는 제목의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해당 웹사이트([www.dcfstraining.org](http://www.dcfstraining.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CFS 웹사이트(DCFS.Illinois.gov)의 '의무 신고자 매뉴얼(Mandated Reporter Manual)'에는 일리노이 거주 의무 신고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세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Illinois Department of  
**DCFS**  
Children & Family Services

SAFETY SAFETY  
FIRST ALWAYS

DCFS.Illinois.gov

Printed by Authority of the State of Illinois  
DCFS #000 • Feb 2024 • 000 copies  
CFS 1050-14-K • rev 2/29/24

전화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Care Enough to Call)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 전화  
**1-800-25-ABUSE**

24 시간 무료

Illinois Department of  
**DCFS**  
Children & Family Services



## 전화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Care Enough to Call)

아동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든 시민이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으로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가 바로 관심의 표현입니다.

**1-800-25-ABUSE (1-800-252-2873)**

### 아동 학대 및 방임이란?

올해 핫라인 담당 직원들은 약 7만 건의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 학대는 부모, 양육자, 동거인 또는 아동의 주변에 있거나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에게 상해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 학대는 신체적 학대(타박상, 화상 또는 골절 등), 성적 학대(신체 접촉, 성교, 음란물 노출, 근친상간 등) 또는 정서적 학대를 가리킵니다. 방임은 부모나 책임을 가진 양육자가 아동에게 적절한 감독, 음식, 의복, 주거, 의료 또는 기타 기본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핫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리노이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법 (Illinois Abused and Neglected Child Reporting Act)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양육자, 동거인 또는 아동의 주변에 있거나 보육 관련자가 아동에게 상해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으로 연락해야 하는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군가가 아동을 구타하거나 물건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
- 아동의 신체에서 사고 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목격했을 때

- 아동으로부터 누군가로 인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 아동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보이거나, 날씨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혼자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면 즉시 핫라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경우에 핫라인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상황에 따라 핫라인으로 연락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아동이 상해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들 때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핫라인으로 전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에게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이 학대나 방임과 관련이 없을 때,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거나 자녀의 부모 또는 친척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간 스트레스가 분명한 원인이지만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의 위험에 놓이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DCFS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부서 (Office of Communications) 에서 문의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312-814-6847 번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DCFS 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핫라인 담당자는 일리노이주 법에 의거하여 어떤 상황이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받은 직원이므로 상세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핫라인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아동의 이름, 주소 및 나이

- 학대 또는 방임 발생 시간, 장소, 의심되는 학대 또는 방임의 내용
- 의심 가해자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및 아동과의 관계(부모, 교사 등)
-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를 걸면 핫라인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듣고 정식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담당자는 신고를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런 사실을 신고자에게 전달하며 신고자가 궁금해 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정식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전문가(Investigation Specialist)가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동이 피해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사례를 선의로 신고하는 개인은 형법 또는 민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심리 담당관이나 판사의 명령 없이는 학대 의심 가해자나 타인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사례는 항상 아동 학대 핫라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히 아동이 상해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있는 긴급 상황의 경우 경찰에 연락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